

# 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1. 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2. 제안일자 및 상정일자

○ 제안일자 : 2007년 11월 30일

○ 상정일자 : 제266회 정례회

2007년 11월 30일,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3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관계법규 인용조문 변경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36조를 제41조로 변경함(안 제1조)

5. 검토의견

○ 「지방자치법」 과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례제정 근거 및 관련법규 조문번호를 인용하고 있는바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함.

붙 임 :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